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2326    |
| 의 퇴 인 | 용혜인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8.28. |
| 추계번호  | 24D4524    |

#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0조(10·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) | 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안 제50조의2(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)      | <p>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,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·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제50조의3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제50조의4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제53조의4에 따른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</li> </ol>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50조의3(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)   |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「민법」, 「국가배상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</li> <li>2.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「민법」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50조의4(손실의 보상)              |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, 피해의 정도, 실제 양육한 사정,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함)</li> <li>2. 10·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53조의5(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) |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, 대상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제52조제3항의 지급결정 및 제53조의4의 임시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0조(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)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   | 안 제50조의2(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50조의3(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50조의4(손실의 보상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53조의5(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(안 제50조·제50조의2·제50조의3 및 안 제53조의5)

- 개정안은 ①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항, 손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, ②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(대위변제 포함)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손해배상금(대위변제 포함)과 위로지원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,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유형, 연령, 과실률, 노동력상실률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정보<sup>1)</sup>가 필요하지만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할

#### 1) 「국가배상법」

제3조(배상기준)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(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) 피해자의 상속인(이하 "유족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.

1. 사망 당시(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)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(月實收入額)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(遺族賠償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
-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.
1.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
  2.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(休業賠償)

정보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#### □ 손실의 보상(안 제50조의4)

-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①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), ②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, 손실 보상의 기준, 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,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·피해자 등의 현황: 2025.7. 기준

(단위: 명)

| 구분 | 희생자 | 피해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|     | 유가족 <sup>1)</sup> | 피해 인정자 <sup>2)</sup> |     |
| 인원 | 159 | 483               | 137                  | 779 |

주 1) 희생자 143명의 유가족 인원임(일부 희생자 미신청)

2)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·결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임

자료: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3.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(障害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(障害賠償)
-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·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.
  1.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
  2.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
  - ④ 생명·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·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.
  -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·직계비속(直系卑屬) 및 배우자,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, 과실(過失)의 정도, 생계 상태,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,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의2(공제액)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.
-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애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na.go.kr |